

##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271
----------	------

제출년월일 : 2008년 7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재원과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관리를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함.

### 2. 주요내용

- 안 제3조에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안 제4조에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안 제6조에 전출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수질개선톤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톤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4. 의안전문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관계법령 : 붙임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관련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시예산으로 최초 편성·확정되었을 때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 제16조 (수질개선톤별회계의 설치 등) ①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수질개선톤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 제17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3의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4.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③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2. 주민지원사업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4.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5.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 6의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따른 경비
7.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제16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2.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제23조 (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3.25, 2005.9.30>

1. 팔당호 및 잠실수중보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 수변녹지 조성사업

2의2. 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3.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4. 환경기초조사사업

5. 삭제 <2005.9.30>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 오염하천정화사업

9.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 비점오염저감사업(비점오염저감사업)

12. 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3. 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

## 수질개선톈별회계 설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2000.12.30 환경부 수질정책과 ]

### 4. 기타사항

- 특별회계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톈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전출을 허용

##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 규칙

[제정 2006. 3. 28 한강유역환경청]

제34조(관리청의 기금 집행) ① 관리청은 「지방재정법」 및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회계가 설치된 관리청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은 관리청은 그 배정받은 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08 - 669호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5. 23.

제 천 시 장

##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명 :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제정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재원과 구분·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관리를 중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함.

### 3. 주요내용

- 안 제3조에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
  -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차입금
  -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안 제4조에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안 제6조에 전출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수질개선톤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톤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6월 12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환경보호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368, FAX 641 - 5379 담당자 : 최경화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지방행정주 사보	환경보호팀장					

##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 공고 제2008-669호
3. 공고기간 : 2008. 5. 23. ~ 6. 12.(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불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103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불임 공고안 1부. 끝.